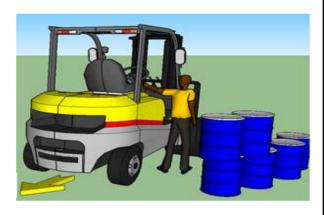
지게차 정비 작업 중 바퀴에 깔림

재 해 개 요

'16. 8월 경북 구미시 소재 폐지 재활용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지게차의 실린더에 그리스 주입작업을 하던 중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던 지게차가 후진하여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

재해상황도

재해 발생상황

- 재해는 마스트 안쪽 실린더 부분에 그리스를 주입하기 위해 지게차 오른편에 서서 시동을 걸었으며,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던 지게차가 급후진 하면서 발생함
 - ※ 기인물 제원
 - 규격 : 3.5톤, 총중량 : 5,750kg, 엔진종류 : 디젤 4기통
- 재해 당시 지게차는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로 주차하였으며, 주차브레이크도 걸지 않은 상태였음
- 피재자는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

재해발생 원인

○ 지게차에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후, 운전석을 이탈하여 정비작업을 실시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
- 지게차 주·정차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 - 주차브레이크 이외에도 불시이동 방지를 위하여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
 - 지게차 시동시에는 반드시 기어(변속레버)를 중립에 위치시키고 지게차의 좌석에 앉은 후 시동을 걸어야 함

관련 법규

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(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)

-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,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포크, 버킷,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
- 2.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- 3.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. 다만,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,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